

# 이해상충방지규정

으뜸자산운용(주)

# 이해상충방지규정

제 정 2021.06.01.

## 목 차

제1조(목적).....	1
제2조(고객이익 우선).....	1
제3조(이해상충문제의 숙지 및 차단).....	1
제4조(이해상충문제의 파악·평가·관리 등).....	1
제5조(이해상충의 유형 등).....	2
제6조(이해상충관리위원회).....	2
제7조(이해상충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	3
제8조(거래제한목록 등 관리).....	3
제9조(접근 및 거래제한).....	3
부 칙.....	4
제1조(시행일).....	4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4조에 따라 및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이  
고유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재산")를 운용함에 있어 임직원, 회사, 고  
객을 포함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발생가능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  
•체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고객이익 우선)

- ①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 ②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 ③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이해상충문제의 숙지 및 차단)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회사나 고객을 상대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고객의 자산, 인력 및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이해상충문제의 파악·평가·관리 등)

- ①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 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 고, 고객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및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1. 서면
  2. 전화·전신·모사전송
  3. 전자우편
  4. 그 밖에 투자자가 요청하는 방법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대한 운용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회사는 고객과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종목 등을 거래제한 또

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이해상충의 유형 등)

①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및 고유재산 운용과 관련한 이해상충의 유형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을 운용하며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상충  
가. 특정한 투자 또는 투자대상에 있어서 회사의 고유재산운용과 집합투자재산운용 간의 이해상충  
나. 선행매매로 인한 이해상충  
다. 회사의 고유재산과 고객재산의 투자 간의 이해상충  
라.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관한 이해상충  
마. 전담중개업자, 집행중개업자,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집합투자재산의 관계회사 간의 이해상충
2. 동일한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간, 집합투자재산과 다른 투자일임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 간의 이해상충
3. 회사의 임직원(임직원의 이해관계인 포함한다)과 집합투자재산 간의 이해상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상충  
가. 선행매매로 인한 이해상충  
나. 개인적인 투자행위로 인한 이해상충  
다. 다른 업무의 겸영으로 인한 이해상충  
라. 재산상 이익 또는 향응의 제공이나 수령으로 인한 이해상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정한 이해상충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 및 임직원은 관련법규를 회피하기 위하여 투자자와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이해상충관리위원회)

① 회사는 이해상충 발생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처리방안의 결정을 위하여 이해상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준법감시인이 하고, 상근임원(사실상의 임원을 포함한다)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된 안건에 관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질의하는 등 적절한 이해상충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조사와 결정은 5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7조(이해상충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해상충 발생시 사실관계 확인 및 처리방안 결정
2. 이해상충방지체계 점검 방안
3. 기타 이해상충관련 사항

②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준법감시담당부서는 이해상충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내부통제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법감시담당 부서에 배치하여야 한다.

### 제8조(거래제한목록 등 관리)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재산 또는 임직원의 매매 등을 제한하는 대상목록으로 지정하여 기록•유지한다.

1. 회사 또는 투자자재산으로 보유한 주식을 대량보유 공시한 경우
2. 회사가 채권·채무자 등으로 참여 또는 관여하는 경우
3. 회사 또는 투자자재산으로 투자한 비상장 회사가 상장되는 경우. 단, 준법감시인이 상장 규모 및 거래량 등을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판단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4. 그 밖에 회사가 매매거래 등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접근 및 거래제한)

고유부문과 투자자부문 간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상호 접근 및 거래를 제한한다.

1. 고유재산운용부서와 투자자재산 운용부서간에는 전산시스템의 계정구분 및 접근권한설정 등을 통하여 운용관련시스템(운용관리시스템, 회계정보시스템, 운용지원시스템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상호간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
2. 고유재산의 매매종목이 투자자재산의 매매종목과 동일 방향으로 매매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재산의 매매가 완료된 이후에 고유재산을 매매하도록 한다. 단, 준법감시인이 해당 종목의 거래량 및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승인을 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3. 투자자재산과 고유재산 또는 투자자재산 간 거래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특정 투자자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2022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